



원자력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과제와 쟁점

이 상 돈

한국원자력법학회 회장 · 중앙대 법대 교수

머 리 말

과학기술부는 최근에 「원자력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 각계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이 법안의 과제와 쟁점을 보다 분명히 부각시켜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법안의 세부적 쟁점을 검토해서 보다 법률안을 보다 완성된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의 개요

법안은 다음과 같은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계획 수립)
- 제4조 (기본계획 시행)
- 제5조 (원자력 해외진출 협의회 설치)

- 제6조 (협의회 기능)
- 제7조 (실무위원회 설치)
- 제8조 (국제기구 등への 진출 지원)
- 제9조 (국제기구 원자력 초급전문가 양성지원)
- 제10조 (원자력 자문단 파견)
- 제11조 (원자력 청년봉사요원 파견)
- 제12조 (해외파견인력의 교육훈련)
- 제13조 (원자력 전용품목 등의 수출통제 지원)
- 제14조 (조세 지원)
- 제15조 (컨소시엄 결성 지원)
- 제16조 (지적재산권 해외출연 지원)
- 제17조 (원자력국제협력자금 확보)
- 제18조 (협력자금 관리 운용)
- 제19조 (협력자금 사용)
- 제20조 (원자력 국제협력단)
- 제21조 (외국정부와의 협력)

과기부는 입법 예고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과학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서 원자력 과학 기술을 G-5 수준으로 향상하고, 나아가 원전 기자재·중소형 원자로·분무형 핵연료·방사성 동위원소 약품 등 강점 기술 분야에서는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원자력 분야는 핵비확산 통제 등 국제 통제 체제하에 있어 민간의 진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자력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성' 과 '촉진' 을 위한 법률

1. 과연 새 법률이 필요한가?

이 법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이 과연 원자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법률



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행정에 있어서 법률의 역할에 관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국한하고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두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동안 나타났던 독과점과 과잉 경쟁의 악순환은 자유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율을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 있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한 사회 복지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규제 법률(regulatory laws)이 모든 나라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잉 규제 현상이 초래했고, 그것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게 되었다.

이에 하이에크·프리드만 등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자고 주장했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미국·영국 등 영연방 국가는 오늘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규제 완화에 매우 뒤쳐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흔히 규제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법치주의(Rule of Law) 원칙상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률 조항 하나하나마다 이익 단체의 권익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관료 집단 의 이해가 걸려 있기도 하다.

2. 조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외에도 경제 활동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도 한다.

경제 활동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교육과 기초 학문 진흥 등 국가의 고유 업무로부터 특정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른바 타겟팅(Targeting)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식의 진흥은 불가능해졌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은 특정 산업에 대해 지원하기보다는 그 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기반 조성에 보다 주력하게 되었다.

법치주의 원칙상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시

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조성 행정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론도 있다.

이런 이론에 의하면 정부는 한 분야에 대한 조성과 지원은 다른 분야에 대한 상대적 박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학술적 논의와는 별개로 이 같은 조성과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필요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 부처에서 저마다 각종 조성 촉진법을 거의 경쟁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3. 각종 조성 촉진 법률의 현황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부 부처는 계획이나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조성 촉진 행정을 할 수 있지만(없다고 보는 학설도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 하지 않니 하는 논쟁을 떠나서 이미 너무나 많은 조성 촉진법이 있다보니 이 같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는 조성

촉진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는 '기반 조성' 법률이 최소한 2건 있으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진흥법이 약 20건(과학교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영화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등), 촉진법이 10여 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이전촉진법, 뇌연구촉진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참조.

이런 개별적 조성 촉진 진흥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환경보전법은 무공해 자동차 및 그 연료 등에 관한 시설과 장치·엔진 등을 개발하는데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다른 법률의 조항으로 삽입된 이 같은 조항을 고려한다면 실정법적 조성 촉진 진흥법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실질적으로 원자력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데에 귀착된다. 필요성

이 있으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법안은 핵 확산을 조장하는가?

이 법안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은 이 법이 제정되면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외국에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점이다.

원자력 물자와 기술은 비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확산조약(NPT) 가입국에 한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현재 세계 원자력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 및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고속증식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열을 올렸던 일본은 몇 차례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열기가 식어 버렸다. 더구나 일본은 장기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 천수이벤 정권이 들어선 대만의 경우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거의 정권의 정책을 재고하고 있다. 1979년 드리마일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은 부시 정부 들어서 새로운 원전 건설을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발동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전에는 아시아 지역이 향후 중요한 원전 시

<표 1> 우리나라의 각종 조성·진흥·촉진 관련 법률

기반 조성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진흥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 과학교육진흥법 • 과학기술진흥법 • 관광진흥법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예술진흥법 • 발명진흥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진흥법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촉진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기술개발촉진법 • 기술이전촉진법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 뇌연구촉진법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비록 아시아 지역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망은 과거보다는 조심스러운 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지역임이 틀림없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원자력 발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시장 잠재력은 있으나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비확산조약 체제의 밖에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 원전을 건설한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 10여년 간 원자력발전소를 꾸준히 건설하고 또 신기술을 개발해 온 우리 나라는 이 지역의 원자력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실제로 원전을 다시 건설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원자력 중흥기가 닥쳐 올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핵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다. 아마도 주로 원자력 해외진출협의회 설치, 원자력 국제협력단 설치, 원자력 자문단 해외 진출, 원자력 청년봉사요원 파견, 원자력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자금 등을 두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나라가 핵비확산조약 체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외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러한 의구심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아마도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원자력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미국·캐나다·프랑스·일본 등 원자력 선진 국가는 원자력 해외 진출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이들 국가는 때로는 정부의 통상 외교 채널을 통하기도 하고 또 민간 업계를 통해 이런 노력을 한다. 미국원자력 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일본원자력산업회의 등이 그런 예일 것이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국영 발전 회사가 사실상 해외 진출에 앞장서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다른 채널을 두고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과연 현명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아니면 그다지 현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방법 밖에 없는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런 방법론적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할만한 것이다.

법안은 부당한 수출 보조 정책인가 ?

이 법안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것이 WTO 협정이 금지하는 수출 보조 정책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WTO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 상계 가능 보조금, 그리고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수출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조금의 정의는 매우 광범하고 신축적이어서 최근의 하이닉스 사건에서 보는 바 같이 출자 전환 등 일체의 자금 제공을 포함한다.

따라서 만일에 이 법안이 원자력 물자를 수출하는 데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면 WTO 협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보조금과 관련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14조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한 조세 감면 및 원자력 관련 시제품 제작 시험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제19조 원자력 해외 진출 또는 기반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 자금의 사용 등이다.

사실 원론적으로 말하더라도 원자력 분야이든 어느 분야이든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연구 개발같은 '업 스트림' 보조가 국제적 감시를 피해나가는 데 훨씬 용이하다.

비록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WTO 협정은 연구 개발비 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미국 등도 원자력 분야에 대해선 기술 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출하는 국방 우주 산업 예산은 물자 구입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결국은 해당 기업에 대

한 국가의 연구 개발 지원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은 눈에 띄지 않는 데 비해 이 법안에 의한 지원은 너무나 부각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법안 자체의 프로그램은 특정 물자에 대한 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자력 국제 협력 자금이 원자력 물자의 해외 진출에 직접 사용된다면 보조금 논쟁을 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특정성이 없는 일반적인 기반 조성 사업에 사용된다면 보조금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특정 물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성 사업에 국제 협력 자금이 동원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원자력 해외 진출 관장 부서 문제

이 법은 원자력 인력, 기술 및 물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원자력은 그것이 발전 사업화된 경우는 산업자원부가 관장하며 기술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과학기술부가 관장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연구 개발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법은 제2조(정의)에서 '원자력 물자'를 방사성 동위원소,

핵물질 또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핵심 요소로 하는 제품, 연구용 원자로, 400 메가와트 이하의 중소형 원자로 및 발전용 원자로 관련 부품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우선 '원자력 물자'라는 통상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기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관련 물자를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원자력 인력이나 기술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다. 제2조(정의)에서 원자력 인력은 연구개발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으로 국한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력과 기술은 통상적 의미의 인력과 기술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법 제1조를 보면 외관상 산업화한 원자력 분야의 인력·기술·물자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이 법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및 '물자'를 다소 제한적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원자력 관련 물질 및 기술 수출에 관한 기존의 법규와 관계도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현재 원자력법 제106조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수출

입 절차는 과기부 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기술개발촉진법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전략 기술인 경우에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기부는 원자로 및 핵물질 등의 수출입과 전략 및 안전에 관한 기술의 수출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외의 전략 물질(이른바 이중 목적 물자)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는 부처간 협의 같은 절차가 제도화 또는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현재의 구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나라 과기부의 권한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보다 오히려 넓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과기부가 규제 외에도 개발과 조성 행정도 겸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 물질 수출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관련 기술은 에너지부가, 그리고 2중 목적 품목은 상무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부처간 협의가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근래의 행정 구조 개편에 따라 내각부 산하의 원자력 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

원자력해외진출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자력분야의 인력·기술·물자 등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인력"이라 함은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및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용역 또는 제품생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2. "원자력 기술"이라 함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이용촉진에 관련된 정보 또는 기술을 말한다.
3. "원자력 물자"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핵물질 또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핵심요소로 하는 제품, 연구용원자로, 400메가와트 이하의 중소형원자로 및 발전용원자로 관련 부품을 말한다.
4. "기반조성"이라 함은 원자력분야의 인력·기술 또는 물자 등의 해외진출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구축하거나 정비·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5. "원자력개발도상국가"라 함은 원자력 기술수준, 원자력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6. "원자력수출입통제"라 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약속에 따라 원자력 관련기술, 물자의 수출입을 위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 인력·기술·물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내 관련기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

항

4. 소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시행)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원자력해외진출 협의회의 설치) ① 원자력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원자력해외진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의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1급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인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기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자력 인력·기술·물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협력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국제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자력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제기구등에의 진출 지원) ① 정부는 국내 원자력 인력의 원자력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관련기관(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등에 고용 또는 파견되는 원자력 인력에 대한 처우, 정보의 제공 및 비용의 지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 원자력 초급전문가제도 운용

3. 국제기구등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 등

② 국제기구등에 진출한 원자력 인력이 소속되어 있던 국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원자력 인력의 해외진출에 따른 해직·파면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정부는 국내 관련기관이 국제기구등의 조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국제기구 원자력초급전문가 양성지원)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 인력의 국제기구등에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 원자력초급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 원자력초급전문가 선정 및 파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원자력자문단 파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개발도상국가와의 원자력협력 증진을 위해 장기간 원자력분야에 종사한 전문경력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자문단을 구성하여 희망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원자력자문단 요원의 선발 방법 및 보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원자력청년봉사요원 파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관련 전공자나 원자력 관련 기술을 보유한 청년(이하 "원자력청년봉사요원"이라 한다)을 지원요원으로 선발하여 함께 파견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로서 원자력청년봉사요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요원으로 본다. 이 경우,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관련규정의 외교통상부장관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③ 원자력청년봉사요원 선발 방법, 보수 지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해외파견 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 관련 해외파견 인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원자력 전용품목 등의 수출통제 지원)

① 원자력 기술이나 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물자가 원자력 수출입 통제품목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를 요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핵비확산체제에 의해 수출통제품목으로 규정된 원자력전용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이나 물자를 핵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목적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 기타 확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품목의 수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입국 또는 운송경유국 정부와 원활한 운송에 대해 협의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조세 지원등) ① 정부는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학계·연구기관 또는 원자력 산업체가 원자력 관련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시제품의 해외수출 또는 시험 등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컨소시엄 결성 지원) 정부는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원자력 해외진출을 위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지적재산권 해외출원 지원) 정부는 원자력관련 지적재산권의 해외출원 및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원자력국제협력자금 확보) ① 정부는 원자력 인력·기술 또는 물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동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국제협력자금(이하 "협력자금"이라 한다)을 확보·운용할 수 있다.

② 협력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원자력 인력·기술 또는 물자의 해외진출에 관련되는 산업체·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자발적 기여금
2.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의 지원금
4. 협력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18조 (협력자금의 관리·운동) 협력자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동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의 관리·운동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단체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원자력국제협력단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자금의 사용) ① 협력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8조 내지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원자력협력사업의 지원
2.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 비

용의 지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 해외진출 또는 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원자력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소재 대학 및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 (원자력국제협력단) ① 원자력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산하에 원자력국제협력단(이하 "국제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국제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자력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2. 정보 수집·분석 및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
 3. 원자력개발도상국 연수생의 국내 교육훈련 및 관리
 4. 원자력 관련 기술전시회 참가 및 개최 등 국내 원자력 기술개발 성과의 대외 홍보 활동
 5.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 워크샵, 세미나, 훈련과정 등 국제협력 행사의 주최 및 지원사업
 6. 기타 원자력 국제협력 증진사업
- ④ 기타 국제협력단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외국정부와의 협력) ① 정부는 원자력 인력·기술 또는 물자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국가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관심분야가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 정부와 원자력관련 면허, 자격 및 기술기준에 대한 상호인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